

소음 허용기준 (소음·진동관리법)

● 제작자동차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가속주행소음 (dB(A))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가	나			
경자동차	가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나	76 이하	77 이하			
승용자동차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6 이하	77 이하			
	중대형	77 이하	78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화물자동차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7 이하	78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 참고: 1. 위 표 중 경자동차의 "가"의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경자동차의 "나"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나"의 규정은 직접분사식(DI) 디젤엔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위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가"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차량 총중량 2톤 이상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프로드(off-road)형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 출력 195마력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1dB(A)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표의 가속주행소음기준에 2dB(A)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4. 가속주행소음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운행자동차 (시행규칙 제40조 관련)

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대성자동차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199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년1월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경 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승 용 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중 량 자동차		107 이하	105 이하	

나.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1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100 이하	110 이하
	승용3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105 이하	112 이하
화물자동차	화물1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100 이하	110 이하
	화물3	105 이하	112 이하

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 종류	소음 항목	배기소음 (dB(A))	경적소음 (dB(C))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화물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